

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박 성 근]

목 차

- 1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

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3. 01. 00.

나. 발 의 자 :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(11명)

(김홍섭, 이홍희, 박수자, 표주숙, 신재화, 신중양, 김향란,
최준규, 이재운, 신미정, 김혜숙)

다. 회부일자 : 2022. 11. 29.

2. 제안이유

- 「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총무위원회 소관사무를 변경함(안 제3조제2항제2호)
기획예산담당관, 전략담당관, 행정국, 경제복지국,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무를 변경함(안 제3조제2항제3호)
안전건설국, 농업기술센터,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71조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
 - 예고기간 : 2022. 12. 30. ~ 01. 4.
 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 및 「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조례」에 따라 집행부 조직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관계법령

지방자치법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주요 개정사항

가. 1국, 1담당관 신설

- 1) 행정복지국, 경제산업국 ⇒ 행정국, 경제복지국, 안전건설국
- 2) 기획예산담당관 ⇒ 기획예산담당관, 전략담당관

나. 1과 폐지: 미래전략과

다. 국 신설에 따른 과 조정

국	과
행정국(4)	행정과, 인구교육과, 민원소통과, 재무과
경제복지국(4)	경제기업과, 문화관광과, 복지정책과, 행복나눔과
안전건설국(5)	안전총괄과, 산림과, 환경과, 건설교통과, 도시건축과

라.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: 총 정원 변동없음